

충청북도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(안)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3년 6월 9일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6월 9일

3. 제안 이유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7호의 규정과 행정자치부 「2003년 공유재산관리지침(2003. 2. 12)」에 따라
-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·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
- 2003. 4. 29 한국토지공사(충북지사)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공유재산을 “한국생명공학연구원”에 무상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

4. 심의 사항

- 위 치 :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685-1
(오창과학산업단지 내)

- 면 적 : 총 287,008.1㎡(86,820평) 중 257,256.1㎡(77,820평)
- 용 도 : 연구시설 용지
- 기 간 : 20년간 무상
- 신청인 : 한국생명공학연구원

5.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가 21세기 바이오신산업 창출의 집적지화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생명공학 인프라 구축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유치, 오창캠퍼스를 조성함에 있어 충청북도지사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동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코자하는 것으로
-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없으나, 재산을 무상사용토록 함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재산권을 행사하여야 하나, 동 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용지매매 계약서상에 명시한 대로 향후 매매대금을 완납한 5년후에나 이행케 되어 있으므로 소유권 확보 이전에 동 재산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무상사용케 하기 위해 2003. 6. 12일자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겠으나, 이를 근거로 재산권 행사에 하자는 없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,
- 재산의 사용 허가기간을 20년으로 하고 대부기간 만료시에는 수허가자가 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, 무상사용 허가후 수허가자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상태에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후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.